

# 대학 진학, 졸업 후 취업까지 생각해야

미국 대학들은 학사관리가 엄격하다. 입학했다고 자  
동으로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. 일정 기준 이  
상의 내신(GPA)를 받지 못하면 학사 징계를 받고 끝내 학  
사 제적을 당할 수 있다.

명문 주립대학인 UC 버클리의 경우 한국 학생의 4%가  
제적을 당하고, 편입 한국 학생의 18%가 제적을 당하는  
것으로 알려져 있다.

### ■ 한 학기 성적 1.5 미만이면 학사 제적

에듀진(edujin.co.kr)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들  
은 한 학기 성적이 1.5 미만이면 다른 예고 없이 곧바로 학  
사 제적 처리를 한다. UCLA를 비롯해 많은 미국 대학들의  
학사 경고 규정을 보면 “한 학기 학점이 1.5 미만이면 제적  
처리 한다” 라고 돼 있다. 1-4학년 가운데 어느 한 학기에  
이런 상황에 처하면 곧바로 제적된다.

그러나 학생이 어느 학년, 어느 학기 건 학점이 2.0 미  
만이 나오면 대학은 해당 학생에게 학사 주의(Academic  
Warning)을 준다. 그다음 어떤 학기이건 다시 2.0 이하 학  
점을 받으면 학사 경고(Academic Probation)가 나갈 것이  
라는 예고다.

이 단계에서 대학 카운슬러는 해당 학생을 부른다. 카운  
슬러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해 학생의 상황  
을 파악하고 이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  
다.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카운슬러를 만나지 않는다. 두  
렵고 창피하기 때문이다.

다시 어떤 학기이건 또다시 2.0 미만 학점을 받으면 그학  
생은 대학으로부터 학사 경고(Academic Probation)를 받  
는다. 이 상태에 이르면 대학은 보통 해당 학생에게 다음  
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. 즉 유기 정학 조  
치다.

이 상황의 학생은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인근 커뮤니티  
칼리지에서 부족한 학점을 수강하고 오면 된다. 대학은 이  
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준다.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  
은 이를 거부하고 1년을 그냥 쉬고 다시 도전을 한다. 대부  
분 학생들이 학사 경고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어려워한다.  
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.

여기서 별다른 대책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경우 10명  
가운데 9명은 학사 제적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맞는다. 즉  
다시 돌아가서 어느 학기이건 다시 2.0 미만의 학점을 취득

하면 대학은 예외 없이 학사 제적처리에 들어간다.

대학은 학생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. 대학은 징계 위원  
회를 열고 해당 학생의 소명을 들은 뒤 제적 여부를 결정하  
나 거의 모두 제적 처리가 된다. 이 상황에 이르면 국제학  
생은 3주 이내에 즉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. 이렇  
게 되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.  
미국 대학에 재입학이 어려워진다. 규정상 신입도 안 된다.

### ■ 명문대 합격만이 능사 아냐, 졸업 후 취업까지 생각해야

명문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. 합격을 하고  
이후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고 취업까지 해야 레이스가 끝  
나는 것이다. 그럼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희망 대학에 합  
격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.

대학에 입학할 해서 학점 취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 
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. 병을 치료  
를 하지 않은 채 오래 방치를 하면 병이 깊어지고 치료 불  
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. 대학에서의 학업적 문제도 조기에  
파악을 해 대처를 하면 학사 제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미  
리 막을 수 있다.

# 사회봉사, 명문대 합격 결정적 요소 될 수 있다

대학 입학 사정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봉  
사(커뮤니티 서비스)는 대학 입학 사정에서 합격에 결  
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.

‘미래교육연구소’ (소장 이강렬)에 따르면 지난해 실  
시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3%는 거의 비슷한 프로  
파일을 가진 학생을 놓고 누구를 뽑을까 고민할 때 사  
회봉사 경험은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 
답했다.

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다른 아카데미적 기  
록이 약한데 봉사 활동 기록만으로 합격을 얻어 내기  
는 어렵다는 점이다. 즉 사회봉사라는 단독 요소로는  
합격이 될 수 없다. 부연하면 GPA가 낮고 SAT, ACT  
기록이 낮은 학생이 봉사활동만 많다고 상위권 대학  
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. 모든 기록이 비슷해서 누  
구를 뽑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사회봉사는  
tie-breaker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그렇다면 입학 사정관들은 사회봉사를 많이 한 학생  
을 왜 좋아하고 학생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  
야 할까?

대학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만  
큼 교실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. 대학  
에 지원을 할 때 성적 요소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선발  
요소이지만 높은 GPA와 SAT, ACT점수 만으로 입학  
허가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. 대학들은 지원 학생들  
이 학교 밖에서 활동한 모습과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  
친 것을 보고 싶어 한다. 이 가운데 한가지가 바로 사회  
봉사, 지역봉사다.

사회봉사, 커뮤니티 서비스는 학생이 대학에 지원을  
할 때 단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. 커뮤니티  
서비스는 매우 보람 있는 일이다. 학생이 지역 사회에  
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생은 이런 봉사를 통해 더 많은  
것을 배우는 상호작용을 한다. 커뮤니티 서비스는 학생  
에게 연민과 리더십, 창의력, 통찰력, 협동심을 키우는

기회를 제공한다.

대학들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교실에서 공부  
를 잘 하기만을 바라지 않는다. 공동체 밖에서 영향력  
있는 활동을 하고, 동시에 캠퍼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  
칠 것을 요구한다. 입학 사정관들이 이런 학생을 선발  
하는 이유에 대해 ‘자기 대학의 가치를 공유할 가능성  
이 높기 때문’ 이라고 답을 했다.

커뮤니티 서비스가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하기 싫  
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. 단지 대학입학사  
정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다면  
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. 진정으로 즐기고 자기의  
관심사에 맞는 사회봉사활동을 찾아야 한다. 양보다  
는 질이다. 잠깐 하는 것보다 수년간 계속 하는 것이 중  
요하다. 따라서 사회봉사활동은 11학년때 하지 말고 9  
학년때부터 시작해야 한다. 짧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 
것보다 한 곳에서 오래 활동하는 것이 좋다.

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

“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.”

# 천관우 변호사 그룹

이민법, 상법, 부동산법 전문 **프로디 관련 상담**

## 고국에 계신 부모님/배우자 영주권 신청

- 이민법** 영주권 (취업 1,2,3순위 이민 - NIW, 국제적기업간부급, 간호사 포함,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, 종교이민) 각종 비이민비자 (H1B, R1, E2, E1, L1, F1, O, P, TN/TD비자 등), DACA, 601A Waiver, 245i 추방유예상담, J1 Waiver, 영주권 인터뷰, 재입국허가서, 영주권 재발급, 시민권 신청 **\*취업 영주권 상담 / DACA 연장접수\***
- 부동산법**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/강제퇴거명령(이박션)/Title에 대한 분쟁-Quiet the title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- 상법** 계약분쟁 소송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


천관우 변호사

서울고·연세대·법학박사  
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
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

josephlaw1224@gmail.com

☎ 상담문의

**LA Office** 213-232-1655  
3600 Wilshire Blvd., #1227, Los Angeles, CA 90010

**OC Office** 714-522-5220  
6281 Beach Blvd., Suite 300, Buena Park, CA 90621